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42 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임광현·박성준·강득구

서영석 • 박홍배 • 정일영

이건태 · 황정아 · 신영대

김정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(6%~ 45%)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%~ 5%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.

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,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,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중 "1천500만원"을 "2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・②	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	③		
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			
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9.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	9		
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			
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			
(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			
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			
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			
는 제외하며, 이하 "분리과세			
연금소득"이라 한다)			
가.・나. (생 략)	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		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	다		
소득의 합계액이 연 <u>1천50</u>	2천만		
<u>0만원</u> 이하인 경우 그 연	<u>원</u>		
금소득	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